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동형 충전기의 이용을 위한 콘센트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설치하도록 하고, 그 설치비용을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2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확대하는 한편,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30336호, 2020. 1. 7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배기장치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.

<국토교통부 제공>

○고용노동부령제273호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)

관보 제19656호(2019.12.26.)에 게재된 “고용노동부령제273호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)”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0년 1월 7일

고용노동부장관

관 보 내 용	정 정 사 항	비 고
<추 가>	제449조제2항 중 “별표 12 제1호 카목·호목·추목·스목·파목·저목”을 “별표 12 제1호12)·44)·56)·67)·96)·106)”으로 한다.	관보 제378쪽 시작부분

※ 정정사유

○ 개정안에서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.

- 별표 12를 개정하였으나, 같은 별표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지 않아 이를 반영

고 시

●법무부고시제2019-308호

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.

2020년 1월 7일

법무부장관

성 명	생년월일	등록기준지	전(前) 국적	국적취득일 (취득고시)	취소사유
	성별		회복 전 성명	국적회복허가 취소일 (취소고시)	비고
김석자	1945.8.2.	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450	중국	2019.9.24. (제2019-208호)	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국적취득
	여		JIN SHIZI	2019.12.31. (제2019-308호)	